

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보수규정



KOREA SINGERS
ASSOCIATION

사단
법인 **대한가수협회**
KOREA SINGERS ASSOCIATION

(사)대한가수협회 보수규정

2025년 01월 08일 제정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(이하 ‘본회’ 라 한다) 임직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본 규정은 중앙회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보수의 형태)

- ① 보수는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
- ② 보수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무처에서 요청하고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일급제 혹은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2장 보수체계

제4조(연봉)

- ①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- ②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급 및 경력,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하며 ‘별표 1’ 과 같다.
- ③ 성과연봉은 전년도 직원에 대한 근무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하며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. 단, 그 지급액은 연봉의 20%의 범위로 최대로 한다.

제5조(수당)

- 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-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업무개시 전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사전결제를 받은 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이외 본회에서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퇴직금)

-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
 1. 퇴직
 2. 사망
 3. 본회 해산
- ②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한다.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- ③ 직원의 업무 성과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별도 의결이 있는 경우, 이를 따른다. 단,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제2항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, 제2항의 금액으로 한다.
- ④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

제7조(보수의 계산)

- ① 보수는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계산한다.
- ② 채용, 승급, 감봉,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- ③ 신규채용직원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고, 수습기간에는 해당 호봉의 80%를 지급한다. 단, 신규채용직원의 업무적응도 및 우수한 업무성과를 보였을 경우, 사무처에서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 법정휴가, 연차휴가, 병가기간 등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보수지급일)

- ① 당월 임금은 익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.
-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일용근로 및 계약직원의 보수)

사무처의 사업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 및 계약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4장 보칙

제11조(업무수행비용)

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임직원 및 회원이 본회를 대표하거나 혹은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.

제12조(특별공로금)

- ① 직원이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(2025.01.08.)

- 1.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기본연봉표

(단위 : 원)

구분	사무국장	팀장	과장	대리	주임	사원
1	38,000,000	35,500,000	33,000,000	30,000,000	27,000,000	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한 최저임금
2	38,800,000	36,280,000	33,775,000	30,680,000	27,600,000	25,250,000
3	39,600,000	37,060,000	34,550,000	31,360,000	28,200,000	25,800,000
4	40,400,000	37,840,000	35,320,000	32,040,000	28,800,000	26,350,000
5	41,200,000	38,620,000	36,090,000	32,720,000	29,400,000	26,900,000
6	42,000,000	39,400,000	36,860,000	33,400,000	30,000,000	27,450,000
7	42,800,000	40,180,000	37,630,000	34,080,000	30,600,000	28,000,000
8	43,600,000	40,960,000	38,400,000	34,760,000	31,200,000	28,550,000
9	44,400,000	41,740,000	39,170,000	35,440,000	31,800,000	29,100,000
10	45,200,000	42,520,000	39,940,000	36,120,000	32,400,000	29,650,000